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6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이철규·김기현·주호영

김선교・강승규・박상웅

박덕흠 · 김장겸 · 정희용

서일준 • 박충권 • 이상휘

유상범 • 나경원 • 김민전

주진우 · 서천호 · 조배숙

박수민 • 서지영 • 신동욱

인요한 • 우재준 • 곽규택

의원(2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, 연구기관,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"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"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

별법안」(의안번호 제48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## 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19	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	사용료등의 감면	2029. 12. 31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